

【사건번호 2022-001】 기획재정부 복권당첨정보 API 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 대상 공공데이터: 복권당첨정보 API 데이터

2. 사건개요

- 신청인은 앱개발을 목적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https://www.dhlottery.co.kr/>)에서 제공하는 복권당첨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Open API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복권데이터를 불특정 다수에게 Open API로 제공시, 추첨번호 예측서비스나 사설 불법 복권시장에서 악용사례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Open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공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피신청인은 「복권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법인 등에게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제12조), 위탁을 받은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정보를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33조),
 - 피신청인으로부터 복권사업자로 위탁받은 (주)동행복권이 운영하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데이터 관련 복권당첨에 관한 회차, 추첨번호, 등위별 당첨결과 등을 DB로 보유·관리하고 공개하고 있음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복권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DB화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복권법 제33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정보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피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Open API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사설 불법 복권 시장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공거부사유로 주장하므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은 공공기관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
 -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제공대상 데이터를 변형, 가공 등을 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홈페이지 게시글 형태가 아닌 API로 제공해달라는 제공방식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의 취지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넘어서는, 제공 데이터의 형식이나 제공방법 등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까지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거부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 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가공 등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가능한 Open API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는 공공데이터법이 공공기관에게 '이용자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제2조제4호),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도록(제24조제2항) 한 규정과 그 취지를 고려한 것임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존 조정사건과 달리 데이터의 악용사례(피신청인에 따르면 복권당첨번호 예측 등 사행성서비스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가 다수 존재하므로 신청인의 데이터 활용목적이 그와 같은 악용사례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 후 조정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제17조제1항),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 이 사건 데이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33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와 관련한 당첨에 관한 정보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게시글 형태로 이미 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피신청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Open API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Open API를 개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공거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우리 위원회는 그간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제고를 위하여 Open API 방식의 데이터를 제공 신청할 경우 가능한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해 왔으나,
 - 이 사건 데이터 관련, 사행성 서비스에 이용되어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이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는 취지의 복권법 개정을 추진중인 점,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도 신청인이 구체적인 활용목적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Open API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5.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